# 청하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1996. 3. 1 개정 2003. 5. 30 관리과81412-953(2003.05.30) 개정 2007. 4. 3 청하초-3352 개정 2009. 4. 23 청하초-1627 개정 2011. 4. 13 학교현장협력과-6058(2011.4.6.)

#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호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 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교는 청하초등학교라 한다.
- 제3조 (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김제시 청하면 대청 4길 25에 둔다.

# 제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 제4조 (수업 연한)

- ①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②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승인을 받은 아동은 5년으로 한다.

#### 제5조 (학년, 학기)

- ①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 ②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 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6조 (휴업일 등)

①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06.3.16) 1. 국경일 및 공휴일

- 2 법정 공휴일 및 정부가 정한 임시 공휴일
-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 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함.
  - 4. 개교기념일: 10월 8일
  - 5. 학교장 재량휴업일
  - ②제1항 제3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③제1항 각 호 외의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mark>학교장은</mark> 이를 교육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 ④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mark>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mark> 학생을 등교시킬 수 있다.

# 제 3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 제7조 (학생수용)

본교는 교육장이 지정한 통학구역 내 취학아동 전원을 수용한다.

#### 제8조 (학급수 및 학생정원)

- ①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제 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수업운영, 수료 및 졸업, 평가

#### 제9조 (교육과정)

- ①본교의 교과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②본교의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통합(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 제10조 (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항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 야 한다.

- 1.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운영한다.
- 2.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 (수업운영)

- ①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 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다.
- ③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내용, 수업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④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이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⑥현장체험학습의 활동유형은 테마식 체험학습과 도·농간 교류체험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 흙사랑 체험학습 등으로 한다.
- ⑦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개별 위탁 체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고, 가족 동반체험학습, 효도·방문체험학습 기간은 연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테 마현장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⑧이외 현장체험에 관한 사항은 상급 기관의 최근 지침에 의거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다.

#### 제 12조(출석)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은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조퇴 등)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과, 외출 및 조퇴를 할 수 없다.

#### 제14조(출결)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 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교칙에 의거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재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 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인하다
- ③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제10조 6항의 기준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 하다
-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소정의 등교시각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등교(조회참석) 후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⑦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⑧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9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제15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사망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2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고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	하지 않음.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	수를 학교장	
	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제16조(출석사항의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 ② 해당학년 동안 지각(또는 조퇴, 결과) 1회~8회인 경우와 최대 결석 2 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인 경우를 정근으로 한다.

#### 제17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 제출
- ②사고로 인한 결석: 무단으로 결석(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 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③생리결석: 여학생들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 (단. 보호자가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④기타 결석

-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 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 제 18조(준용규정)

조퇴, 결과 중 제1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질병으로, 동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사고로, 동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로 각각 처리한다.

**제13조 (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 (수료 및 졸업)

①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파악하여 학생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으로 한다.
- ③학교의 장은 <mark>본교의</mark>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 을 수여한다
- ④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교장이 명예졸업 대상 자로 인정할 수 있다.

# 제 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 제15조 (입학 시기, 입학 자격, 재취학)

- ①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초·중등 교육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취학 아동
- ③교육감이 고시한 내용에 해당하는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아동
- ④본교의 재취학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취학 의무의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경우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제16조(편입학)

- ① 외국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하다
- ②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 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야 한다.

#### 제 17조(전학)

본교에서 타교로 전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18조(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 ①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 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학교장은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④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②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③평가 문항은 본 학년 해당 교육과정 기초·기본 평가(수학, 국어)에서 출제하고, 각 70점 이상 득한 아동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으로 재취학 시킬 수 있다.

### 제20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 ①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 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한다.
- ②외국 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 서류를 받아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평가를 거쳐 적 정 학년에 배정한다.
- ③비인가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학생의 편입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 할 수 있다.
- 1.해당 교육기관이 통폐합될 때

- 2.적정 학력이 있으나 입학 연령이 초과된 학생
- ④위 ③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학력인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적정 학년에 배정한다.

#### 제21조(미취학 아동의 관리)

- ①학교장은 의무교육 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목적) 이 지침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 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시행 방침)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2.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3.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4. 조기진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다.
- 5. 조기진급 등의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최대한 유지한 다.

### 제24조(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 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 다.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 기 졸업할 수 있다.
- 제25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장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제26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 ①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 ②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제25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8조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⑥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제27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 ①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②, ④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 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계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8조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26조제3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2. 제27조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 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 ④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다.

- ⑤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 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 다.
- ② 제28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 7장 학생포상, 징계

#### 제30조 (학생포상 및 징계)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학교생 활규정'이라 한다)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학생포상은 별도의 포상계획에 의한다.

# 제 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제31조 (학생자치활동)

①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mark>학급 및</mark> 전교 어린이회를 둔다. ②학교장은 <mark>학급 및</mark> 전교 어린이회 등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하초등학교 생활규정에 따른다.

# 제 9장 학교규칙 개정절차

#### 제32조 (학교규칙 개정절차)

- ①교육상 필요하거나 상위법의 개정으로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를 확정하고 시행한다.
- ②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본 학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 위법과 상부기관의 최근 지침, 그리고 일반적인 관습에 준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2002년 9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교의 학칙은 2003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교의 학칙은 2007년 4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4. 23 청하초-1627)

① (시행일) 이 학교의 학칙은 2009년 4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교의 학칙은 2012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교의 학칙은 2018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청하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안)

2002. 09. 01 제정 2006. 08. 31 개정 2006. 12. 08 개정 2009. 03. 18 개정 2010. 06. 04 개정 2011. 04. 13 개정 2011. 07. 14 개정 2014. 03. 27 개정 2018. 3. 1 전면개정

추가 및 수정

#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이 규정은 '청하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 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8조, 제17조,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3781호)」에 의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규칙을 민주적 절차로 제정, 교육적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 제4조 【학생선도위원회】

- 1. 학생들의 생활교육과 관련 징계 사항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 2.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부장교사 및 학부모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담당 교사를 간사로 한다.

3.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기능】

- 1.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 2. '학생선도위원회'는 심의 사안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학생·학부모는 통보 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학생생활

####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제9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제10조【폭력예방】

-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른다.
-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생활담당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

- 야 하며 익명의 신고 방법을 확용할 수도 있다
- 4. 폭력피해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생활담당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 5.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1.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2.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교감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3.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제12조 【동아리활동】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나이스 창의적 체험활동 및 스포츠클럽 활동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를 명 이상 두어야 한다.
- 2.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 3.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4. 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하다.
- 제13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멀티미디어실, 미술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제14조 【용의사항】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1.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3. 신발이나 가방은 활동하기 편리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4.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 제15조 【학급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하다

제16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 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제2절 교외생활

제17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2. 학교 교직원 또는 교우를 만나면 상호 예의를 표한다.
-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7.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금지 및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제18조 【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제3절 정보통신

**제19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20조 [통신기기 관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는 자유롭게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 1.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후 개인이 보관한다.
- 2.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 3. 1항과 2항을 어겼을 경우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다음 날 하루 학교 소지 금지, 세 번째부터는 학부모와 상담 후 학교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 3.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기,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한다.
- 4.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제4절 어린이회

제21조 【회원】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3 ~ 6학년학생으로 한다.

제22조 [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 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3조 [금지활동]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4조 [협의·지원사항]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 연구 활동
- 2. 예술. 체육. 동아리활동

#### 3. 각종 캠페인 및 봉사활동

제25조 【승인】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 【학급회 임원】학급어린이회 임원은 3~6학년 각 학급별로 회장 1인으로 구성하되 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 제27조【직무 및 선출】

- 1.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28조 【전교어린이회】 학생회 심의 · 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 1. 구성 및 임기
- 가. 전교어린이회 회장단은 3~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나. 회장단은 회장 1명(6학년), 부회장 2명(5학년, 6학년 각 1명)으로 구성한다.
- 다.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라. 전교어린이회 3~6학년 학생을 고루 배정하여 두레로 조직하고 5, 6학년을 중심으로 각 두레별 두레장을 선출한다.
- 2. 직무
- 가 회장(1명)은 전교어린이회 대표로서 회의를 주관한다
- 나. 6학년 부회장(1명)은 회장 유고시 역할을 대행하고 칠판서기를 담당하며, 정족 수 확인 및 표결을 확인한다.
- 다. 5학년 부회장(1명)은 회의록 기록 및 회의 사항 요약보고, 장부 보관 관리, 어린 이회 안내 및 공고를 담당한다.
- 3. 기능
- 가.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나. 기타 필요한 사항
- 4. 회의
- 가.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나. 정기총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 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 다.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라.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 제4장 학생생활 지도

#### 제1절 생활지도

제29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1.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2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體罰)의 일체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 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3조 【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 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학생선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 제34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1.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2.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나.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다.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라.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교육
- 마.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바.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사. 기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3.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 되면 학생선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5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 제2절 징 계

제36조 【징계원칙】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2. 학생장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3. 학생장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제37조【징계의 심의】

- 1.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2.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3. 학생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8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 1.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훈육과 훈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가. 학교 내 봉사: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나. 사회봉사: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다. 특별교육이수: 1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라. 출석정지: 학교 폭력 또는 교사의 교육에 불응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중대한 교칙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를 거쳐 출석정지(등교 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
  - 마. 훈계, 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40조【징계의 방법】

- 1.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담당 교사의 교육을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하다
- 3.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 4. "출석정지"가 10일 이상일 경우 전학을 권고하고,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명시) 동안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 재하지 않는다.

제41조【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 내의 봉사
  - 가. 학교환경 미화작업
  - 나. 교사들의 업무보조
  - 다. 교내도서관 도서·교재·교구 정비
  - 라. 인성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진행
- 2. 사회봉사
-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3. 특별교육 이수
-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 담 근거 명시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라.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마.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바.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등교정지) : 출석정지로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할 경우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 5.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 제42조【징계내용 통보 및 진술권 보장】

- 1.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청취한다.
- 2.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3.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 제43조【심의 확정 및 재심요구】

- 1.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2.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3.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4.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5.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44조 【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제45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장 규정의 개정

####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2. 위원회는 교감, 교사 2인, 학부모대표 1인, 학생대표 4명(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전교어린이회 회장·부회장, 4학년 학생대표) 8인으로 위원장, 간사(생활교육 업무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47조 【개정안의 발의】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마.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가급적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49조【심의 및 결정】

- 1.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3. 어린이회 규정의 개정은 어린이회 정기 회의에서 개정한다.
- 제50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제51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 정 개정 절차'에 따라 <mark>개정할 수 있다</mark>.
- 1.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 < 징 계 기 준 >

	항	행위내용	징 계							
분			주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예절	1	언행이 불손한 학생								
	2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3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4	교사에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 한 학생								
	5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6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7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8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수업	9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10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1	수업을 거부한 학생								
폭력	12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13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도, 가담한 학생								
	14	이유 없이 상.하급생간에 폭력을 행한 학생								
	※ 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를 우선으로 한다.									

<sup>※</sup> 학생 징계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 한다.